

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려요.

정보공시 사항

- 01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
- 02 보조사업 수입·지출 내역
- 03 실적(정산)보고서 : 결과보고서
- 04 정산서 검증결과(검증보고서) : 1억원 이상
- 05 감사지적사항(해당시)
- 06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관련보고서 : 10억 이상
- 07 중요재산 현황(해당시)
- 08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*

* 해외소재 단체의 경우 국내 사업자번호가 없는 경우, 보조사업 외 다른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 가능

투명한 보조금 관리를 위한

정보공시 안내

해외소재 동포단체 대상



보조금 정보공시, 왜 필요한가요?



법적근거는?

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6조10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1조2
* 정보공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보조금 삭감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보조금 정보공시는?

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
보조사업자(간접보조사업자)는,

보조금 교부·집행·정산 내역을 공개하여 국민이 보조금 사용 현황을
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.

어디서, 어떻게 등록하면 되나요?

재외동포청 해외 동포단체 지원금 정보공시는
재외동포 정보포털 코리아넷(www.korean.net)에서
등록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.



정보공시 주요절차



정보공시 대상

동일 회계연도 내에 수령한 보조금 총액 1천만원 이상*
* 1천만원 미만으로 여러 건을 수령한 경우 합산 총액이 1천만원이 넘으면 모두 공시 대상

공시기한: 4월 30일까지

* 정보공시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아닌
회계연도 종료일(12월 31일)로부터 4개월 이내 공시